

[별표 6]

시설 이용수칙

(제21조 관련)

1. 정상적인 강습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 이용 및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자는 시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체육시설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 전 고혈압, 심장병, 배변장애 등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직원 또는 강사에게 알려하며, 알리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손해 발생은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시설 이용 중 타인에게 상해 및 손해를 끼칠 경우 이용자(가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장애등급 1~3급(복지카드 기준) 사용자께서는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보호자와 동반 입장하셔야 합니다.
7. 시설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질서를 위하여 직원 또는 강사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7]

탈의실 및 샤워장 이용수칙

(제21조 관련)

1. 샤워를 먼저 하신 후 수영복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옷장 열쇠는 손목 또는 발목에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탈의 후 수건 및 세면도구를 지참하여 샤워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탈의실 및 샤워장 내에서는 절대 뛰어서는 안 되며,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위를 기울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 가방 및 샤워바구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설 이용 전(강습 또는 자유수영) 샤워기, 탈수기 등 미리 선점하는 행위를 삼가바랍니다.
7. 체온조절 탕 또는 체온조절 실을 장시간 이용할 경우 현기증 등으로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체온을 유지하는 용도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샤워장에서 오일 및 마사지 크림 사용 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9. 샤워장 내에서는 염색, 세탁, 세신을 금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샤워 후 몸에 물을 닦으신 후 탈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샤워바구니 및 개인 가방에서 물이 흐리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헤어 드라이기는 머리카락을 건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14. 직원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0]

실내 체육관 이용수칙

(제21조 관련)

1.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체조 및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2. 실내 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동 후 사용한 기구나 물품은 제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내 체육관 내부에 난로, 가스레인지 등 화기물품 반입을 금지합니다.
5. 실내 체육관 내 모든 장소는 금연이며, 음주 자는 입장을 금지합니다.
6. 실내 체육관 사용자는 시설물을 아껴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보관되지 않은 귀중품 및 기타 본인 소유 물품을 분실할 경우 체육시설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실내 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 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및 광고물 게시는 할 수 없습니다.
10. 실내 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쓰레기는 체육문화센터의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야 하며, 일반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실내 체육관 내에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12.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이용질서 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1]

강의실 이용수칙

(제21조 관련)

1. 운동 전 반드시 준비 운동(체조 및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2.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운동화 착용이 필요한 강좌는 실내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하신 교육물품은 제자리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는 강습에 참여하실 없습니다.
6.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7. 강습 종료 후 전등 소등과 냉·난방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8]

수영장 이용수칙

(제21조 관련)

1. 수영장 입장 전 반드시 샤워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영장 입장 전 파스, 밴드 등은 제거 후 수영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내 수영복 착용 바랍니다.(비치웨어, 레쉬가드 등 야외 수영복 착용 금지)
4. 수영장 입장 시 일반 안경 착용은 불가하며, 도수 수경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영장 이용에 필요한 수영모자, 수영복 개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수영모자, 수영복, 수경 등 개인물품은 별도 대여하지 않습니다.)
6. 수영장 수조에 입수하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체조 및 스트레칭)을 하여야 합니다.
7. 수영장 수조에 입수할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입수하여야 합니다. 풀장 가장자리에서 입수할 경우 먼저 풀장 가장자리에 앉아 바닥에 양손을 짚고 뒤돌아 안전하게 입수하여야 합니다.
8. 수영장 내에서 절대 뛰거나 타인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9. 수영장 내에서는 다이빙을 금지합니다.
10. 수영장 내에서는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은 착용을 금지합니다.
11. 수영장 레인에 올라타거나 횡으로 레인을 넘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출거나 어지러울 때에는 수영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13. 음주 자는 입장을 금지합니다.
14.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보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자는 수영장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15.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자는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16. 아쿠아로빅 수강 회원께서는 실내용 정품 아쿠아 슈즈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동화 사용금지)
17. 자유수영 이용자는 개인이 지참한 수영 보조 물품(킥보드, 헬퍼)사용이 가능합니다.
18. 자유수영 시 본인의 수영 수준에 맞는 레인을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 지병이(심장병, 고혈압 등) 있는 사용자께서는 시설이용 전 건강상태를 강사 또는 안전요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고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0. 시설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21. 체육문화센터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2. 강사 및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2]

개인 사물함 이용수칙

(제21조 관련)

1. 개인 사물함은 강습회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임대되며, 수강기간에 한하여 연장 사용이 가능 합니다.
2. 개인 사물함 사용 신청서 작성 시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사물함 1개월 사용료는 선납이며, 사물함大 5,000원, 사물함小 3,000원입니다.
4. 개인 사물함 보증금은 등록 시 1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물함大 15,000원 사물함小 9,000원입니다.
5. 임대되지 않은 개인 사물함이 있을 경우 매월 26일부터 익월 7일까지 현장 방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6. 개인 사물함 연장 사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매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환불은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일할 정산하여 사용료 차감 후 환불됩니다.
8. 개인 사물함 중도 환불의 경우 사용료 정산은 해당 월의 일수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30분의 1로 나눈 금액을 1일 사용료로 하며, 사물함小의 1일 사용료는 100원, 사물함大의 1일 사용료는 166원입니다.
환불금액 산정은 1일 사용료와 사용일수를 곱하여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9. 환불신청 시 사물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 물품을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인 사물함 사용료를 3개월 동안 장기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사용료 미납금액이 차감됩니다.
11. 3개월 이상 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개인 사물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회수 조치됩니다.
(3개월 까지 개인 사물함에 보관, 3개월 이후 물품 회수)
12. 개인 사물함에서 회수된 물품은 별도의 장소에 1개월 보관됩니다.
13. 1개월 내에 물품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물품은 폐기처분됩니다.
14. 개인 사물함 내에 귀중품(고가의 귀중품, 현금, 카드 등) 보관은 불가하며 도난, 분실 시 체육시설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5. 개인 사물함 이용 중 본인과실로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16. 개인 사물함 열쇠 분실 시 즉시 직원에게 알리고 15,000원을 납부하여 열쇠를 교체하여야 합니다.